

이슬람 보험(타카풀)의 구조 및 전통 보험과의 차이점 연구

정 아 름*

目 次

- | | |
|---------------------|---------------------|
| I. 서론 | IV. 이슬람 보험의 구조 및 전통 |
| II. 이슬람 보험의 일반론 | 보험과 비교 |
| III. 이슬람 보험의 구체적 태양 | V. 결론 |

I. 서 론

2017년 글로벌 보험 시장의 성장률은 4%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보험 시장은 포화상태에 놓여있다. 국내 보험 시장도 마찬가지로 업계는 무한경쟁 중에 있으며, 보험회사 운영에 부과되는 다양한 규제와 정채된 수익으로 선진국 위주의 기존 보험 시장과는 다른 대안 시장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글로벌 타카풀(이슬람보험) 시장은 2012~2015년 동안 연평균 13% 성장하여 2015년 말 총 보험료 기준 14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일반 타카풀은 중동지역, 가족 타카풀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주단 타카풀 상품이며 이슬람 국가의 금융당국은 장기적으

■ 투고일자 : 2017년 11월 16일, 심사일자 : 2017년 12월 19일, 게재확정일자 : 2017년 12월 26일.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로 산업의 지속적 향상 가능성을 위해 타카풀에 대한 규제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있다. 무슬림 인구의 증가와 그들에 대한 낮은 보험침투율 및 고령화 사회에 따른 연금 상품 수요 증가 등은 타카풀 시장 성장의 잠재요인으로 향후 큰 폭의 발전이 예상된다.¹⁾

이슬람 금융은 무슬림들의 종교원칙이자 모든 법규범의 근간이 되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에서 제시하는 원칙에 맞게 이루어 져야 하므로 이슬람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장논리가 아닌 이슬람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본 문언에서는 급성장하고 있는 이슬람 금융 중 특히 전통적인 보험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이슬람 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이슬람 금융의 특성과 이슬람 보험의 종류를 살펴보고, 전통 보험의 일반론을 기술한 뒤 양자 간 차이점을 논하겠다.

II. 이슬람 보험의 일반론

1. 이슬람 금융의 일반론

이슬람 국가에서는 보통 '이슬람 법'으로 번역되는 '샤리아(Sharia)'를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근본 규범으로 한다. '샤리아'의 어원은 '낙타를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주는 길(path)'이라는 의미이나 이슬람교에서는 '인간이 알라의 뜻을 따라 행하여야 하는 길'로 풀이된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종교적 원칙을 국가 최고의 지도 이념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법규범을 제정하고 있으므로 '샤리아'는 실정법의 근간이자 국민 개개인의 생활의 기준이 되는 도덕률이 된다.²⁾ 서구사회에서 법이란 일반적으로 계약, 개인의 권리와 의무, 범죄 등 특정 생활관계와 그와 관련된 사안에 적용되지만, 샤리아는 인간 삶의 모든 양상이 알라의 바람대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근본 가치의 개념으로 해석된다.³⁾

따라서 이슬람 금융에도 '샤리아'는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1) 이해은, "글로벌 타카풀 시장의 현황 및 전망", KIRI 보험연구원, 2017, 41면.

2) Jim Phipps, et al., "Middle Eastern Law", The International Lawyer, 2006, p.598.

3) 손태우, "샤리아(이슬람법)의 法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54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3면.

①이자(Riba)금지, ②불확실성(Gharar)금지, ③도박(Maysir)금지의 세 가지 금지와 ①손익 공동부담의 원칙, ②자금 퇴장 금지의 원칙, ③샤리아위원회 승인 획득의 원칙 등 세 가지 원칙으로 나타난다.

먼저 ‘샤리아’에서는 이자(리바: Riba)를 금지하고 있다. 이슬람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해 이자를 정당한 노력 없이 타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액의 이자도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이자가 없는 금전거래는 허용되고 있다. 아랍어 “리바(riba)”는 증액이란 언어적 뜻에서 고리대금, 부당이익, 또는 사기성 상행위 등으로 풀이된다. 대출된 원금 외에 그 이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이자 행위도 포함된다. 고리대금이 초래하는 빈익빈 부익부를 이슬람은 허용하지 않으며, 고리대금 행위는 나태한 습성을 조장하여 공동사회의 윤리와 도덕적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다고 본다. 전통적인 보험은 보험료를 계산하는 수리구조에서 이자가 부리 되는 특성과 저축성보험에서 이자가 부리 되어 지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 금전거래문화에 반한다.⁴⁾

둘째로 ‘샤리아’에서는 불확실성(가라르: Gharar)을 금지하고 있다. 불확실성은 미래의 분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며, 이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보험상품의 매매에서 보험상품은 장래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보험상품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어 이슬람의 교리에 어긋난다.⁵⁾

또한 여느 문화권과 마찬가지로 이슬람에서도 도박(마이스르: Maysir)을 금지하므로, 도박적 요소가 있는 제비뽑기나 복권 발행도 금지된다. 전통적인 보험상품은 우연히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납입한 보험료를 잃게 되는데, 이는 꾸란과 하디스에서 금지한 도박과 유사한 면이 있다.⁶⁾

위의 세 가지 금지 외에 첫 번째 샤리아 원칙으로 손익 공동 부담의 원칙이 있다. 이슬람 사회에서 금융활동은 공동투자를 기본으로 하며 금융기관뿐 아니라 개인도 사업투자의 일원으로 역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슬람 국가에서는 자금을 투자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뿐 아니라 손실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분담하게 되므로 투자 원금이나 확정적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⁷⁾

4) 김종원, “이슬람국가의 타카풀보험 연구”, 123-124면.

5) 김종원, “이슬람국가의 타카풀보험 연구”, 124면.

6) 김종원, “이슬람국가의 타카풀보험 연구”, 125-126면.

둘째로 자금 퇴장 금지의 원칙이 있다. ‘샤리아’는 무슬림들이 보유하는 모든 자금이 경제활동에 투입될 것을 명령하며 자금의 저축을 금지한다. 이를 위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일정 비율을 사회에 기부하는 활동(자카트: Zakat)으로 개인과 사회 상호간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여 책임 있는 도덕사회 건설이라는 ‘샤리아’의 이념을 이루려 한다.⁸⁾

셋째로 샤리아위원회 승인 획득의 원칙이 있다. 이슬람의 모든 금융은 반드시 샤리아 위원회로부터 해당 금융이 ‘샤리아’에 부합한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샤리아위원회는 이슬람 종교지도자와 이슬람법학자로 구성된 최고 종교심의기관으로 그 형태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기관에 속한 위원회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⁹⁾

2. 샤리아와 타카풀의 관계

이슬람금융(Islamic Finance)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전통금융(Conventional Finance)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샤리아’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금융을 말한다. 이슬람금융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금융회사와 고객이 사업의 파트너로서 참여하여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위험분담의 특성을 지닌다. 이자는 불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금지되므로 실물자산의 매매를 금융자산과 연계하여 이자 대신 투자수익을 배당받는 등 무이자 금융기법을 개발해 운용한다.¹⁰⁾

이러한 이슬람 금융거래 중 이슬람보험은 아랍어로 상호부조를 의미하는 ‘타카풀(Takaful)’이라 불리는데, 이는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각 타카풀 계약자로부터 기부형태로 자금을 출연받아 공동기금을 형성하여 각출된 기금을 다른 계약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계약이다.¹¹⁾ 샤리아 원칙에 따라 장래의 재난 대

-
- 7) 손태우·김홍배·정희진, “이슬람금융상품의 국내도입을 위한 이슬람은행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54권 제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81면.
8) 한동훈·이원삼·안수현, “이슬람법이론 및 금융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09, 86면; 손태우, “샤리아(이슬람법)의 法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54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3면.
9) 이충열·이영수·제상영, “이슬람 금융: 이론과 현실 및 활용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50면.
10) 박은혜, “이슬람금융 도입을 위한 주요국의 법·제도 정비 현황 및 시사점”, 조사연구 Review, 금융감독원, 2010. 10.
11) 손태우·김홍배·홍문영, “이슬람 금융에서의 샤리아위원회에 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문총 제35권 제1호, 2014, 60면.

비를 위해 계약자가 자금을 서로 각출하고 사고발생시 기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참여자들 간의 상호부조와 기부를 근거로 하여 운영된다는 점에서 상호보험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전통보험 중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가족타카ful(Family Takaful)과 손해보험과 유사한 일반타카ful(General Takaful)로 구분하고 있다.¹²⁾

전통 보험은 장래일의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보험사고 발생시 이자의 지급을 포함하는 금전인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도박과 유사한 사행성을 띠는데, '샤리아'에 반하는 이 같은 전통보험의 특성을 제거하는 것이 이슬람 보험 운영에서 주된 사안이 된다.

Ⅲ. 이슬람 보험의 구체적 태양

1. 이슬람보험의 구조

이슬람보험은 기본적으로 형제애(brotherhood), 연대의식(solidarity) 및 상호협동(mutual cooperation)이라는 Al-Takaful의 정신을 구현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공동체(또는 동일 보험집단) 구성원들의 우연한 사고 발생시, 보험을 통해 구성원의 금전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호보험(mutual insurance)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이슬람보험이다. 따라서 전통적 보험에서 계약상대방의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위험의 매매거래와는 다르며, 과거의 두레나 품앗이와 더 유사하다. 이는 상업 보험이 발달하기 전의 공동체가 구성원이 당면한 사고, 사망 및 재산상의 손실 등을 십시일반으로 부조해 주었던 공동체적 상황에서 볼 수 있는 형태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위험성 증가로 공동체(현재는 유사한 위험으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려는 보험집단으로서 참여자(participant)라고 할 수 있다)가 각출한(보험료의 형식) 자금을 모으고 관리해 주는 제3의 대리인이 필요하며 이 대리인이 바로 타카ful 운영자(operator) 즉, 보험사가 된다.¹³⁾

타카ful은 계약자펀드(policyholders' fund)와 운영자펀드(operators' fund)를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한다. 계약자펀드는 전통적인 상호보험회사와 매우 유사한 방법인 순수협조원칙에 의해 운영되며 잉여금 및 손실액은 모두 계약자펀드로 귀속된다. 운영사는 잉여금에

12) 최미수, "이슬람보험의 운영모델 분석", 무역상무연구 제69권, 2016. 454-455면.

13) 정영천, "이슬람보험의 구조와 보험사 운영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문 제26-3집, 55면.

대한 상환청구권을 갖지 않으며, 관리비용과 수수료 등은 운영사펀드에서 지불된다. 계약자펀드는 운영사펀드로부터 분리되어 운영사펀드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계약자펀드에 결손이 발생하면 운영사는 무이자대출을 통해 계약자에게 추가적인 재무안정성을 제공한다.¹⁴⁾

또한 타카풀도 이슬람금융의 일종이므로 그 운영은 샤리아 원칙을 따라야 하며 그 허용 범위 내에서만 투자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모든 타카풀은 이슬람 법학자들로 구성된 이슬람율법 감독위원회(Shariah Advisory or Supervisory Board)를 설치하여 모든 활동에 대하여 항상 샤리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보증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 소속 이슬람 법학자들은 이슬람 보험회사의 비즈니스모델, 이익배분정책, 보험상품설계, 투자가이드라인 등이 이슬람 율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¹⁵⁾

2. 이슬람 보험의 운영 모델

가. 무다라바

이 모델은 이슬람 계약방식인 무다라바에 기반한 타카풀 운영모델로서, 타카풀 운영자(operator)와 보험가입자(policy-holder)가 보험료투자수익에 대한 공유비율(PSR, Profit Sharing Ratio)을 정하고 투자에 따른 이익을 동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형태이다. 이 경우, 운영자는 타카풀 관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스스로 부담하는데 이는 투자수익을 공유함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볼 수 있다. 이 모델은 말레이시아에서 주로 이용된다.¹⁶⁾

나. 와칼라

와칼라 모델은 타카풀운영사가 대리인으로서 계약자를 대표해 펀드를 관리하며, 또한 모든 계약자들에게 공정성, 형평성, 적정성을 보장한다. 대신에 타카풀운영사는 운영비용을 포함하는 수수료를 미리 계약된 조건에 따라 보통 선불로 받으며 영업이익이나 투자이익을 배분받지는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타카풀운영사는 단지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와칼라 모델의 구조를 보면, 우선 계약자들로부터 모집한 각출금(보험

14) 최미수, “이슬람보험의 운영모델 분석”, 무역상무연구 제69권, 2016. 456면.

15) 최미수, “이슬람보험의 운영모델 분석”, 무역상무연구 제69권, 2016. 457면.

16) 정영천, “이슬람보험의 구조와 보험사 운영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6-3집, 58면.

료)에서 신불의 대리인수수료(Wakalah Fee)를 차감한 순 각출금이 리스크에 대비한 상호 부조 각출(위험보험료)과 저축투자를 위한 각출(저축보험료)로 구분된다. 계약자리스크펀드(PRF: Participant's Risk Fund)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험금, 재보험, 준비금 조정을 위해 지불되는 상호적 공동자금이며 타카풀 각출의 다른 부분은 계약자투자펀드(PIF: Participant's Investment Fund)에 맡겨진다. 계약자투자펀드와 계약자리스크펀드의 초과분이 샤리아원칙에 입각한 자산에 투자되며 발생하는 모든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이익은 계약자에게 완전히 분배된다. 만약 영업에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가 추가자금을 각출하는 것이 아니라 타카풀운영사가 무이자대출로 제공하며 향후 이익이 발생할 때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¹⁷⁾

다. 무다라바-와칼라 혼합형

무다라바-와칼라 혼합모델은 타카풀의 기능 중 일부에 대해서는 수수료계약의 와칼라 방식을 적용하고 다른 부분에는 이익배분의 무다라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혼합모델에서는 영업부분은 수수료계약방식으로, 투자운영에 대해서는 이익배분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타카풀운영사는 와칼라 모델과 같이 계약자의 대리인이 되어 보험료에 해당하는 계약자들의 타카풀 각출금에 대리인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모든 영업이익은 계약자들에게 배분하는 반면 투자활동에 대해서는 무다라바 모델에 입각하여 타카풀운영사가 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계약자와 운영사간에 사전 협의된 약정비율로 배분한다. 또한 잉여금이 발생하면 효과적인 운영을 행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 혼합모델은 중동의 많은 타카풀운영사가 사용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가족타카풀 상품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모델은 관리의 용이성으로 인해 정책적으로 장려되고 있다.¹⁸⁾

이 모형은 와칼라모형에서의 단점인 투자수익배분에 대한 인센티브 결여로 인한 운영자의 업무해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타카풀펀드 운영을 위한 수수료를 지급함과 아울러 일정수준 이상의 투자수익에 대하여는 운영자의 기업가(Mudarib)로서의 역할을 인정하여 투자이익분배권을 부여하는 타카풀 운영 형태이다. 따라서, 이 모형은 운영자에게 기본적인 대행 수수료를 통한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타카풀펀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17) 최미수, “이슬람보험의 운영모델 분석”, 무역상무연구 제69권, 2016, 460-461면.

18) 최미수, “이슬람보험의 운영모델 분석”, 무역상무연구 제69권, 2016, 463-464면.

통한 수익의 확보 가능성을 함께 부여하고 있다는 면에서 운영자와 참여자의 동반성장이라는 타카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만, 타카풀의 위험공유영업(보험영업)에서 발생하는 잉여분에 대한 운영자의 참여여부에 대하여는 학파간의 이론이 있어 각 국가별로 감독당국과 샤리아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한다. 타카풀 운영자는 주고객군, 지역적인 수용성(GCC인지 말레이시아를 포함하는 동남아인지), 샤리아 위원회의 시각, 국가별 규제형태 등에 따라 운영모델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모델은 순수 모델의 단점을 보완한 무다라바-와칼라 혼합모델이다. AAOIFI15)는 와칼라모델과 혼합모델을 타카풀 운영 모델로서 인정하고 있다.¹⁹⁾

라. 워크프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의 워크프 모델은 운영사와 계약자간에 공유하는 이윤은 없다. 운영사는 무이자대출을 통해서 그리고 계약자는 각출을 통해 펀드를 조성하며, 운영사나 계약자는 잉여금이나 이익을 수령하지 못한다. 이러한 비영리 모델은 사회 및 정부 소유 공공기관에서 사용되고 있고 잉여금 펀드만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소유권이 계약자에게 귀속되며 잉여금이 생기면 계약자 잉여금으로 기업 내부에 유보하거나 계약자 배당으로 배분하는 전통적인 상해보험회사와 가장 유사하다.²⁰⁾

마. 와칼라-워크프 혼합형

와칼라-워크프 모델에서는 타카풀 보험 회사가 타카풀 보험 판매 초기에 일정금액을 기부하여 워크프 펀드를 설정한다. 그리고 타카풀 보험 계약자는 타카풀 보험 가입에 따른 기여금을 워크프 펀드에 납입한다. 최초의 워크프 펀드의 설정 목적은 향후 타카풀 보험 펀드의 적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최초로 설정된 워크프 펀드 금액과 타카풀 보험 계약자의 납입금의 합계 금액에서 일정 부분은 타카풀 보험 계약자를 위한 워크프 펀드로 배분되고, 남은 일정부분은 타카풀 보험회사의 운영비를 위하여 배분된다. 타카풀 보험 회사는 타카풀 보험 계약자를 위해 배정받은 워크프 펀드를 투자 운영하며

19) 정영천, “이슬람보험의 구조와 보험사 운영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6-3집, 60면.

20) 최미수, “이슬람보험의 운영모델 분석”, 무역상무연구 제69권, 2016, 464면.

투자 이익 중에서 무다라바 모델에서처럼 투자 기술을 투자한 공동투자가로서 일정 비율을 분배받게 되고 이는 주주에게 배분된다. 타카풀 보험 계약자는 워크프에서 분배받은 펀드금액의 투자이익 중 일정 부분과 언더라이팅 이익에서 타카풀보험과 리타카풀보험의 운영비를 제외한 잉여금을 이익으로서 분배받게 된다.²¹⁾

바. 리타카풀

타카풀의 재보험인 리타카풀은 위의 타카풀 모델에 의해 운영된다. 리타카풀에 참여하는 타카풀운영사들은 그들의 기본 리스크를 리타카풀 풀(pool)로 이전하고 타카풀펀드에서 리타카풀 각출금을 지불한다. 리타카풀 각출금은 운영사의 타카풀 펀드에서 지불되고 리타카풀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타카풀펀드로 분배된다. 리타카풀운영사는 샤리아 원칙에 입각하여 펀드를 운영하고 자산을 관리한다. 또한 리타카풀 풀 안에 있는 모든 출재회사들이 인수계약에 의해 표준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다는 것을 보증한다. 리타카풀은 리타카풀펀드가 결손이 생길 경우 무이자대출을 제공해야 하지만 일반 타카풀펀드들 중 하나가 대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공할 의무가 없다. 리타카풀 모델의 선택은 국제적 보험 물건을 인수하려고 하는 리타카풀운영사에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슬람권에서 가장 일반화되어 사용 중인 와칼라 모델이 리타카풀 모델로 선호되고 있다.²²⁾

IV. 이슬람 보험의 구조 및 전통 보험과 비교

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보험회사의 소유권으로 이전되는 전통보험과 달리 타카풀 보험료는 예탁금 성격으로 계약자 소유이다. 타카풀운영사(Takaful Operator)는 보험회사처럼 리스크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무대행자의 역할을 한다. 또한 사전에 당사자간에 모든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소액 보험료로 고액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의 투기성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이슬람보험의 기본원칙이다. 실물이 수반된 상업거래가 아니라 단지 금전을 대

21) 김종원, "이슬람국가의 타카풀보험", 131면.

22) 이진면 외,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조사보고서, 보험연구원, 2009. 3.

여하고 이자를 받는 것은 서비스 제공 없이 시간의 경과만으로 금전이 스스로 증식된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간주된다.²³⁾

즉 전통적 보험은 계약자의 순수위험(pure risk)이 회사의 투기적 위험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리스크의 거래를 포함하며, 보험회사는 우발적사건으로 인한 지급청구권의 보장의 대가로 보험료를 받는다. 이에 계약자 입장에서는 지급청구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성의 요소들이 존재하며 보험회사는 이자를 수반하는 채권에 투자하거나 이슬람에서는 금기시되는 주식을 보유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슬람교도는 이러한 전통적 보험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부조와 각출에 기초하는 이슬람보험인 타카풀을 활용하여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1. 전통 서구식 보험의 구조

가. 보험의 정의

보험이란 동일한 위험에 처한 다수의 사람들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경제적 수요에 대비하고자 추상적인 위험단체(보험단체)를 구성하고, 그 단체 내에서 통계적 기초와 대수의 법칙(principle of large numbers)에 따라 산출된 일정한 금액(보험료)을 미리 각출하여 기금(공동기금)을 만든 후 약정된 사고(보험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구성원에게 그 기금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적 급여(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위험을 분산하고자 만든 제도이다.²⁴⁾

우리 법원이 판시하는 보험이라는 개념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보험업법 제5조 제1항의 보험사업은 동종의 우연한 사고를 당한 위험이 있는 다수인이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정율의 금액(보험료)을 출연하여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고 현실적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한 재산적 급여(보험금)를 지급하는 사업을 말하고 여기에서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라 함은 계약성립당시 특정의 사고가 그 발생여부, 발생시기가 불확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불확정성은 객관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주관적으로 계약당사자에게 불확정하면 되는 것으로 보험은 사행성을

23) 김지은, “최근 이슬람보험의 동향 및 시사점”, 조사연구 Review, 금융감독원, 2009. 12.

24) 정동윤, 상법(하)(제3판), 2008, 451면; 정찬형, 상법강의(하)(제1판), 2009, 483-484면; 정희철, 상법학(하), 1990, 340면; 양승규, 보험법(제5판), 2004, 121면; 최기원, 보험법(제3판), 2002, 3면; 박세민, 보험법(제4판), 2017, 1-2면.

그 특질로 하는 한편 보험사고는 일정한 기간(보험기간)내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²⁵⁾고 판시 한 바 있다.

나. 보험과 위험

(1) 위험과 불확정성(不確定性)—보험사고

보험사고의 불확정성은 보험을 정의할 때 반드시 포함되는 보험의 요소이다. 보험계약의 의의에 관한 상법 제638조도 불확정한 사고를 요건으로 규정한다. 불확정한 사고의 발생가능성은 위험을 가리키고, 이러한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는 것이다(Ohne Gefahr, Keine Versicherung). 보험사고의 불확정성은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 또는 발생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전자는 교통사고, 화재, 상해 등에, 후자는 사람의 사망, 노령 등에 나타난다. 나아가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정도가 확정되지 않은 것도 보험사고의 불확정성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발생 여부, 발생 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는 사고는 보험사고가 될 수 없다. 예견할 수 있거나 정기적이고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불확정성에 반하는 것으로 보험사고가 될 수 없다.²⁶⁾ 이러한 보험 사고의 불확정성은 객관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주관적으로 계약당사자에게 불확정하면 되는 것으로²⁷⁾,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경우는 보험계약이 무효인 것이 원칙이다.²⁸⁾

(2) 위험의 다수성(多數性)—보험단체

보험은 동일한 위험에 처한 다수인이 위험단체(보험단체)를 구성하고 위험을 분담(위험의 분산)하는 제도이다. 구성원 중의 한 사람에게 약정된 사고가 우연히 발생하고 그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된 경우 위험단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그 경제적 불안을 어느 정도 극복시켜준다는 의미에서 보험단체는 공동의 위험단체라 할 수 있다.²⁹⁾ 이러한 보험의 단체성이란, 보험은 다수의 가입자가 공동비축을 통하여 위험을 종합 평균화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험단체라는 일종의 사회적 단체가 성립하고, 각 보

25) 대판 1987.9.8.선고 87도565 결정

26) 한기정, 보험법, 2017, 5-6면.

27) 대판 1987.9.8.선고 87도565 결정

28) 상법 제 644조 본문

29) 대판 1966.10.21.선고 66다1458 결정

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단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각종 제약을 받는다는 성격을 말한다.³⁰⁾

보험단체 내에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기 위해 위험의 다수성(多數性)이 요구된다. 위험단체가 구성되어야만 사고발생의 개연율을 측정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그 구성원들이 납입하는 보험료에 의해 기금 마련이 가능한데, 이는 보험계약의 유상성(有償性)과 관련이 있다. 상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의 단체적 성격이 명확하게 보여진다. 그러나 영리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개별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뿐, 보험계약자 상호간에는 아무런 법률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리보험에서의 보험단체는 추상적으로만 존재한다.³¹⁾

(3) 위험의 동질성(同質性)

위험단체를 구성하고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체구성원들의 위험이 동질적인 것이어야 한다. 사고발생의 빈도와 보험료 규모 등의 통계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위험의 동질성이 요구되며, 이는 위험의 다수성과도 관련된다. 즉, 동질의 위험이 다수 모여 위험단체가 구성되고 그 위험단체 내에서 위험이 전가되고 분산된다.³²⁾

다. 보험계약의 요소

1) 보험계약관계자

가) 보험자

보험자(insurer)는 보험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보험료를 대가로 받고 보험금지급책임을 지는 자이다(상법 제638조). 보험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기타 요건을 갖춘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자가 되려면 50억원 이상(보험업법 제4조 제1항) 또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험업법상 보험자는 보험회사(제2조 6호)라고 하며, 그 법적 형태는 주식회사(제18조 이하) 또는 상호회사(제34조 이하)가 된다.³³⁾

30) 양승규, 보험법, 55면.

31) 정동윤, 앞의 책, 451면; 양승규, 앞의 책, 22-24면; 정찬형, 앞의 책, 484면; 박세민, 앞의 책, 4면.

32) 박세민, 앞의 책, 5면.

33) 박세민, 앞의 책, 99면; 한기정, 앞의 책, 38면.

나)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insurance purchaser)는 보험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638조).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상법 제651조),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상법 제652조), 위험유지의무(상법 제653조) 등의 의무를 부담하며, 보험계약 임의해지권(상법 제649조)을 가진다.

다)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에서 다른 의미를 가진다.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귀속주체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65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를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라고 한다. 피보험이익의 귀속주체와 보험금청구권 행사 주체가 구별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의 귀속주체를 피보험자로 보아야 한다.³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권, 해제 해지권 등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갖지 못하고 원칙적으로 보험료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1차적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하나, 피보험자(타인)도 2차적 보험료지급의무(상법 제639조 제3항 단서)를 부담하며, 피보험자는 고지의무(상법 제651조),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상법 제652조), 위험유지의무(상법 제653조) 등도 부담한다.

인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로 사망, 상해, 질병이 발생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를 자기의 인보험, 다른 경우를 타인의 인보험이라 한다. 보험계약의 사행성으로 인해 도박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하여 타인의 사망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 사전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권리를 피보험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사망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때에도 그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상법 제731조, 732조).

라)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beneficiary)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인보험에만 존재한다. 인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만기 도래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가지며(상

34) 대판 1999.6.11.선고 99다489 결정

법 제733조), 특별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같은 경우를 자기를 위한 인보험,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인보험이라 한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보험료지급의무가 없으나, 타인을 위한 인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1차적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외에 보험수익자도 2차적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639조 제3항 단서).

2) 보험료와 보험금액, 보험금

가) 보험료

보험료(premium)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자에게 그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액이다. 보험금지급책임에 대한 대가적 성질이므로 보험계약의 성질을 유상계약과 쌍무계약으로 만드는 요소이며 보험상품의 가격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 647조).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자가 받은 보험료는 위험이 개시되지 않았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것이지만, 보험법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는 한 보험자에 대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상법 제648조).

나) 보험금액과 보험금

보험금액(sum insured)은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자가 지급책임을 부담할 금액으로 당사자가 약정한 것으로 정액보험과 비정액보험에서 차이가 있다. 정액보험에서 보험금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 자체이고, 비정액보험에서 보험금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자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상한액이며, 이 범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만큼 지급하게 된다.

보험금이란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현실로 지급되는 보상액을 말한다. 정액보험에서는 보험금액과 보험금이 일치하는 반면, 비정액보험에서 보험금은 보험금액과 같거나 적다.³⁵⁾

35) 한기정, 앞의 책, 41면.

3)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가) 보험기간

보험기간(policy period)이란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책임기간이라고도 한다.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해야만 보험자가 보험금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험기간은 당사자가 정하는데, 보통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며 이를 장래보험이라고 한다. 계약체결 이전 시점을 보험기간의 시작시기로 정하는 경우, 이를 소급보험(상법 643조)이라고 한다.³⁶⁾

나) 보험료기간

보험료기간이란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보험사고의 발생률을 예측하는 최소의 단위기간이다. 즉 위험률을 측정하기 위한 최소 단위기간을 말한다. 보험료기간의 장단은 보험 기술에 달린 문제이나, 실무에서는 대개 1년을 단위로 하여 보험료율을 정하고 있다. 보험료기간과 보험기간은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치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화재보험에서는 보험료기간과 보험기간이 일치하는 반면, 생명보험과 같은 장기보험의 경우 20년 내지 30년이 되는 보험기간이 여러 개의 보험료기간으로 나뉘기도 한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간을 보험료납입기간이라 하는데, 보험기간과 보험료납입기간을 동일하게 할 수도 있고(10년 만기 보험의 보험료를 10년 동안 납입), 보험기간보다 단기로 정할 수도 있다(10년 만기 보험의 보험료를 5년 동안 납입).³⁷⁾

2. 보험법제상 양자의 차이

타카풀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보험'이라기 보다는 보험의 대안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기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전통적 보험은 보험료를 통해 보험가입자의 위험을 보험자인 보험사에 전가하는 형태(risk transfer)를 떠나 타카풀은 상호협동정신에 의거, 공동으로 조성한 자금풀을 이용한 위험의 전가가 아닌 위험의 공유(risk sharing) 형태

36) 박세민, 앞의 책, 124면; 한기정, 앞의 책, 42면.

37) 양승규, 앞의 책 106면; 정동윤, 앞의 책 501면; 정찬형, 앞의 책 536면; 최준선, 앞의 책, 71-72면; 박세민, 앞의 책 128면.

로 보험사는 단순한 자금풀의 운영자이며, 가입자는 보험자이면서 동시에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차이점이 있다.

전통적 보험의 경우 계약내용상 손실발생 시기 및 보상금액이 우연성에 기초하고 있는 바, 내재적으로 불확실성이 포함될 수 밖에 없지만, 타카풀은 불확실성의 요소를 기여금에 기초한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갖고 있으므로 보상금액 수준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로 불확실한 요소를 완화한다. 또한 전통적 보험에서 사고 발생 시에는 소액의 보험료로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보험자의 수익으로 귀속되는데 이는 샤리아에서 금지하는 도박적 요소가 포함된 것이다. 도박을 금지하는 샤리아 원칙에 입각한 타카풀의 경우 타카풀 참여자는 참여자간 손실을 공유하는 선의로 기부형식의 기여금을 적립하며, 손실과 수익도 참여자간 함께 공유함에 따라, 제3자인 보험자는 사고발생 유무와 무관하게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게 된다.

전통적 보험은 보험계리 및 운영상, 보험료를 채권 등 고정수익자산에 투자되는데 이는 이자금지 원칙의 샤리아에 반하므로 타카풀 펀드는 일정한 이자가 있는 자산에 투자되지 않고, 손익공유형 사업에 투자되어 고정이자채권 등을 통한 이자발생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전통적 보험에서 보험영업을 통한 수익은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상호회사의 가입자에게 귀속되며, 보험기간 만료시 가입자의 수익공유 참여가 배제되나, 타카풀에서는 수익과 손실이 모두 참여자에게 공유되며, 손실발생시 참여자간의 추가 납입이 필요하다. 다만, 타카풀 기간 중의 탈퇴자에 대한 손익분배문제는 타카풀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³⁸⁾

V. 결 론

본 문언에서는 전통적인 보험의 기본적인 구조와 구성요소 및 전통적인 보험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이슬람 보험의 기본 개념과 운영 모델, 양자 간 차이점을 기술하였다. 세계적인 금융 위기 속에서 보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여부도 불확실한 가운데 국내 보

38) 정영천, “이슬람보험의 구조와 보험사 운영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6-3집, 54면.

험사의 외연 확대 및 수익성 확보를 위해 이슬람 보험(타카풀)은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동 및 동남아시아 지역 경제는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산업인프라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21세기 새로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맞추어 이슬람금융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오일머니에 의한 시설투자 증가가 이슬람보험인 타카풀의 성장도 견인하고 있다.³⁹⁾

타카풀은 지역적으로 중동 국가들에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며, 무슬림들이 많은 각국에서 운영 중에 있다. 전체 타카풀 시장에서 GCC⁴⁰⁾ 지역이 가장 큰 비중(77%)을 차지하며, 동남아시아(15%), 아프리카(5%) 등의 비중이 크다.⁴¹⁾ 지역별로 살펴보면 GCC 지역은 연평균 17%, 아프리카 지역은 연평균 19% 성장하였으며, 동남아 지역은 연평균 4% 감소하였으나 이는 최근 미국 달러 대비 현지 통화가치 절하로 인한 것으로 현지 통화로는 성장세에 있다.⁴²⁾

이에 따라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이슬람 금융의 특성과 타카풀 운영모델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바탕이 된다면 글로벌 타카풀 시장은 정체된 보험 시장의 성장에 주요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39) 최미수, “이슬람보험의 운영모델 분석”, 무역상무연구 제69권, 2016. 468면.

40) 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의 6개국으로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함.

41) 이혜은, “글로벌 타카풀 시장의 현황 및 전망”, KIRI 보험연구원, 2017, 41면.

42) 이혜은, “글로벌 타카풀 시장의 현황 및 전망”, KIRI 보험연구원, 2017, 42면.

참 고 문 헌

- Jim Phipps, et al., "Middle Eastern Law", The International Lawyer, 2006.
- 이혜은, "글로벌 타카풀 시장의 현황 및 전망", KIRI 보험연구원, 2017.
- 손태우, "샤리아(이슬람법)의 法源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54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김종원, "이슬람국가의 타카풀보험 연구"
- 손태우·김홍배·정희진, "이슬람금융상품의 국내도입을 위한 이슬람은행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54권 제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한동훈·이원삼·안수현, "이슬람법이론 및 금융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09.
- 이충열·이영수·제상영, "이슬람 금융: 이론과 현실 및 활용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 박은혜, "이슬람금융 도입을 위한 주요국의 법·제도 정비 현황 및 시사점", 조사연구 Review, 금융감독원, 2010. 10.
- 손태우·김홍배·홍문영, "이슬람 금융에서의 샤리아위원회에 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5권 제1호, 2014.
- 최미수, "이슬람보험의 운영모델 분석", 무역상무연구 제69권, 2016.
- 정영천, "이슬람보험의 구조와 보험사 운영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논총 제26-3집.
- 이진면 외,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조사보고서, 보험연구원, 2009. 3.
- 김지은, "최근 이슬람보험의 동향 및 시사점", 조사연구 Review, 금융감독원, 2009. 12.
- 정동운, 상법(하)(제3판), 2008.
- 정찬형, 상법강의(하)(제1판), 2009.
- 정희철, 상법학(하), 1990.
- 양승규, 보험법(제5판), 2004.
- 최기원, 보험법(제3판), 2002.
- 박세민, 보험법(제4판), 2017.
- 한기정, 보험법, 2017.

<국문초록>

2017년 글로벌 보험 시장의 성장률은 4%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보험 시장은 포화상태에 놓여있다. 국내 보험 시장도 마찬가지여서 업계는 무한경쟁 중에 있으며, 보험회사 운영에 부과되는 다양한 규제와 정체된 수익으로 선진국 위주의 기존 보험 시장과는 다른 대안 시장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글로벌 타카풀(이슬람보험) 시장은 2012~2015년 동안 연평균 13% 성장하여 2015년 말 총 보험료 기준 149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슬람 국가의 금융당국은 장기적으로 산업의 지속적 향상 가능성을 위해 타카풀에 대한 규제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있으며, 무슬림 인구의 증가와 그들에 대한 낮은 보험침투율 및 고령화 사회에 따른 연금 상품 수요 증가 등은 타카풀 시장 성장의 잠재요인으로 향후 큰 폭의 발전이 예상된다.

타카풀은 지역적으로 중동 국가들에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며, 무슬림들이 많은 각국에서 운영 중에 있다. 전체 타카풀 시장에서 GCC 지역이 가장 큰 비중(77%)을 차지하며, 동남아시아(15%), 아프리카(5%) 등의 비중이 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GCC 지역은 연평균 17%, 아프리카 지역은 연평균 19% 성장하였으며, 동남아 지역도 큰 폭의 성장세에 있다.

이슬람 금융은 무슬림들의 종교원칙이자 모든 법규범의 근간이 되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에서 제시하는 원칙에 맞게 이루어 져야 하므로 이슬람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장논리가 아닌 이슬람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이슬람 금융의 특성과 타카풀 운영모델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바탕이 된다면 글로벌 타카풀 시장은 정체된 보험 시장의 성장에 주요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이슬람, 이슬람금융, 이슬람보험, 타카풀, 샤리아, 보험

<Abstract>

Study on Islamic Insurance (Takaful) in its structure and distinction from conventional insurance

Jung, Ah-Leum

The growth rates of the global insurance market in 2017 were lower than 4%, which means the market has reached market saturation. Our domestic insurance market also has been facing this excessive competition, and accordingly has searched for an alternative market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western) insurance market.

The Global Takaful (the Islamic Insurance) industry, on the other hand, has grown by 13% with the yearly average during the period of 2012-2015, reporting 14.9 billion dollar in the total insurance fee at the end of 2015. The authorities of Islamic countries are modifying the regulations of Takaful, abiding by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sustainable improvements of the industry in the long run. In addition, Takaful market is expected to develop remarkably because of its potential factors, such as the increase in the population of Muslim, the low penetration rate of insurance products, the increase in the demand for pension products by aging, and so on.

Takaful is operating not only in Middle East but the countries where many Muslims live. GCC accounts for the biggest proportion(77%) in the total Takaful market, followed by Southeast Asia(15%), Africa(5%). In terms of regions, GCC and Africa has grown by 17% and 19% each, with the yearly average, and Southeast Asia has also been on the big rise.

The Islamic finance is the finance compliant with Sharia, the Islamic law which is the religious principle as well as the base of every legislation for Muslim. Therefore, to make way into Islamic market, the right understanding about Islamic culture should be preceded rather than market logic. The bottom line is that if the sufficient researches for Islamic culture, Islamic finance, and Takaful operating model are prepared, global Takaful market could be the major breakthrough for current insurance market situation.

Keywords : Islam, Islamic Banking, Islamic Insurance, Takafu, Shariah, Insurance